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7월 2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프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4. 2. 23. ~ 3. 4.)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0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3년 7월 2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일본	1. 미쓰비시(Mitsubishi Paper Mills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2. 니폰(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3. 그 밖의 공급자	16.23
중국	4. 첸밍(Shouguang Meilun Co., Ltd., Nanchang Chenming Paper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5. 유피엠 차이나[UPM(China)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6. 골드이스트[Gold East Paper(Jiangsu)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7. 그 밖의 공급자	16.23
핀란드	8. 유피엠(UPM Communication Paper O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22
	9. 스토라엔소(Stora Enso Publication Papers O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2.94
	10. 그 밖의 공급자	12.94

비고: 제10호의 공급자가 제8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